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 - 호

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09.26)로 결정고시된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·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. 1. .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변경취지

· 당해지역의 현황여건 및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 결정

2.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 결정조서

구 역 명	필 지		계획내용		비고
	위 치	면 적(㎡)	기 정	변 경	
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**대현동 142-23**	80.0	공동개발 (권장)	공동개발 (지정)	※ 기존 공동개발(지정)된 142-24·142-23호는 142-23으로 토지합병 ('03.12.31)
	대현동 142-28	14.0			
	대현동 142-27	16.0	공동개발 (지정)		
	대현동 142-31	11.0			
	대현동 142-4	426.0		공동개발 (지정)	
	대현동 142-10	89.0			
	대현동 142-11	50.0			
	대현동 142-19	13.0			
	대현동 142-26	15.0			
	대현동 142-16	26.0			
	대현동 142-32	47.0			
	대현동 142-20	26.0	공동개발 (권장)	공동개발 (권장)	
	대현동 142-22	33.0			

※ 상기 내용은 공동개발 변경(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에 관한 사항만 해당됨 (건축허가절차 별도시행)

3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(☎330-8808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

4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□ 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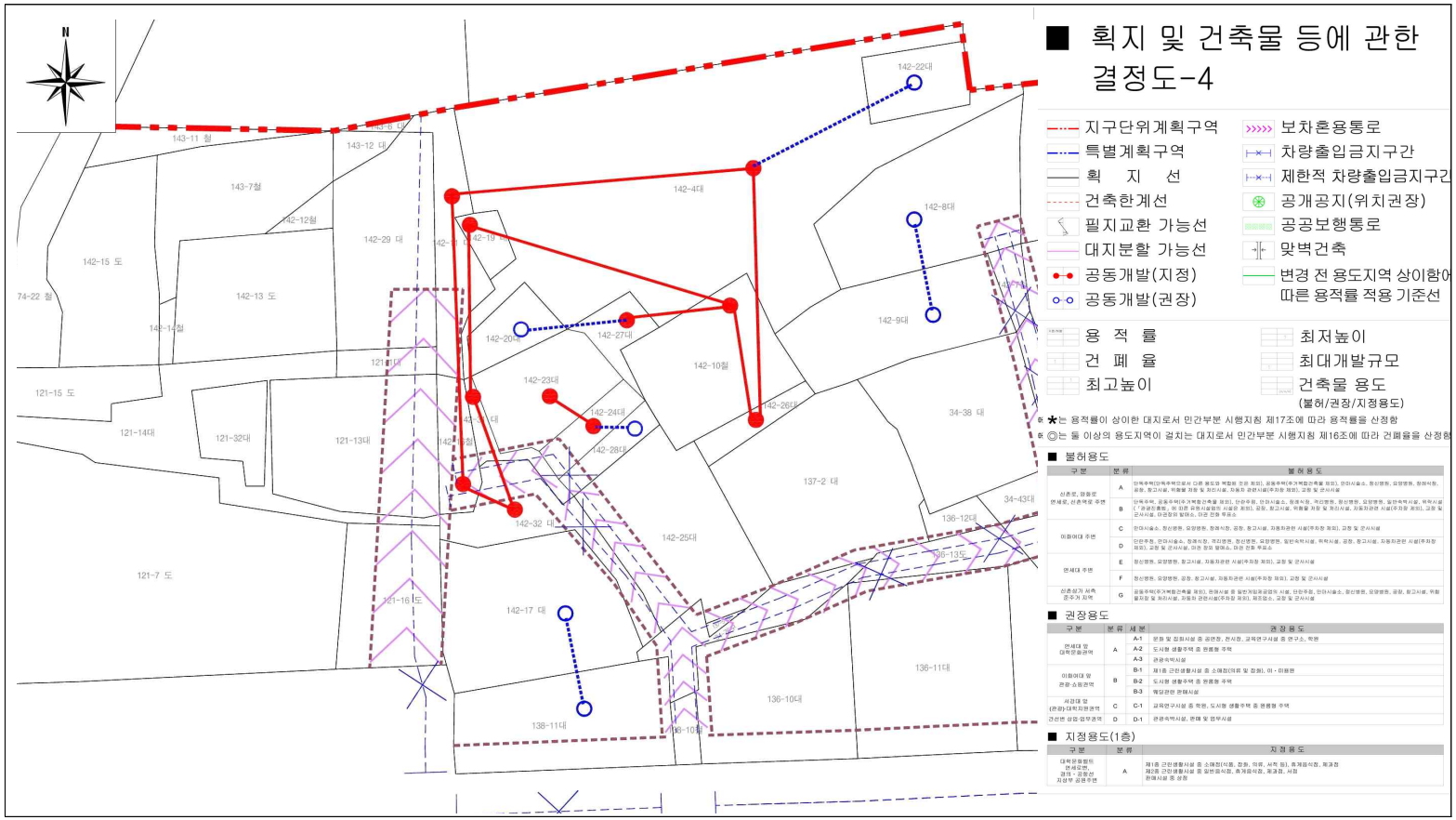

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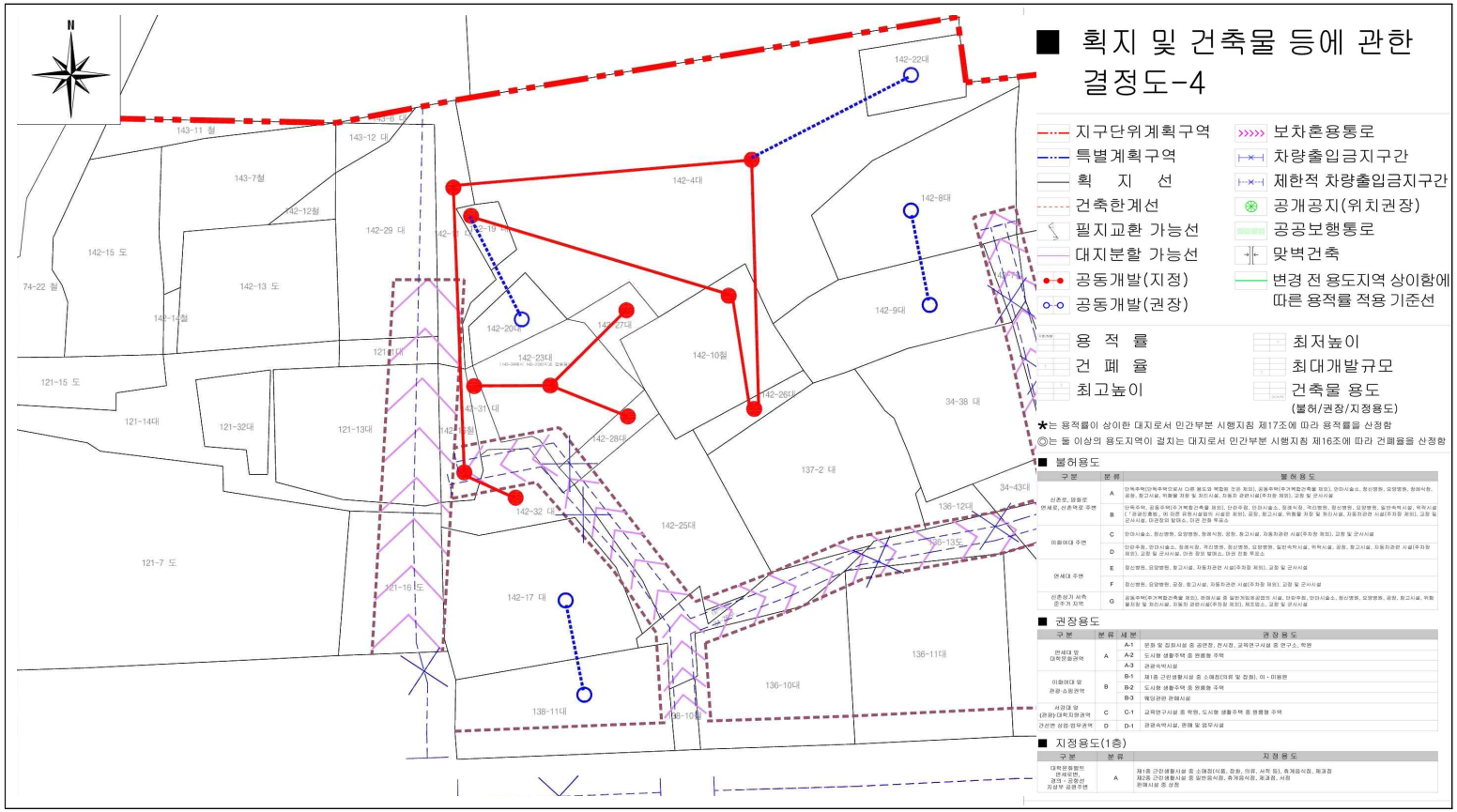
N
142-22대
143-11 철
143-12 대
143-7철
142-12철
142-29 대
142-4대
142-8대
142-15 도
142-13 도
74-22 잡
142-14철
142-20대
142-27대
142-9대
142-23대
142-10철
121-15 도
121-14대
121-32대
121-13대
142-31대
142-26대
34-38 대
142-28대
137-2 대
34-43대
142-32 대
136-12대
142-25대
136-13도
121-7 도
121-16도
142-17 대
136-11대
136-10대
138-11대
138-10철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-4
지구단위계획구역
특별계획구역
획 지 선
건축한계선
필지교환 가능선
대지분할 가능선
공동개발(지정)
공동개발(권장)
보차혼용통로
차량출입금지구간
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
공개공지(위치권장)
공공보행통로
맞벽건축
변경 전 용도지역 상이함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선
용 적 률
건 폐 율
최고높이
최저높이
최대개발규모
건축물 용도 (불허/권장/지정용도)
★는 용적률이 상이한 대지로서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7조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함
◎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대지로서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건폐율을 산정함
■ 불허용도
■ 권장용도
■ 지정용도(1층)